

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(제41조제1항 관련)

1. 전문분야

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다.

- 가. 광물 분야
- 나. 화학 분야
- 다. 철강·금속 분야
- 라. 전기·전자 분야
- 마. 폐기물 분야
- 바. 농축산 및 임업 분야
- 사. 항공 분야
- 아. 공통 분야
- 자. 외부사업 분야

2. 자격요건

- 가.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
- 나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[중앙행정기관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(기후, 해양, 농축산, 산림환경 등을 포함한다)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작성·관리 및 에너지 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말한다]을 보유한 사람

비고

- 1. 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온실가스관리기사·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의 실무경력은 2년 이상으로 한다.
- 2. 제1호자목에 따른 외부사업의 세부 분야,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및 경력 증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